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7년 4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

●대통령령 제 20029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관

제2조의3제1항제1호 중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1) 내지 (7)에”를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1)부터 (7)까지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4.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 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제2조의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3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제3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99인”을 “49인”으로 한다.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6제5항 중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업무집행조합원은 제5항의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변경신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해당 조합의 존속기간
5.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제3조의7을 삭제한다.

제3조의8제1항 중 “법 제4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른”으로, “해산 당시에 평가된 한국벤처투자조합 자산의”를 “한국벤처투자조합 자산의”로 한다.

제3조의9제3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업무집행조합원이 해당 한국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에 한한다)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 (2)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인 모태조합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의 특수관계인인 다

른 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5.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제3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신청서”를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3조의6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 기술분야 연구기관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

라 한다)를 등록하려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계획서(출자비율, 출자내역, 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임원의 이력서

③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2. 임원
3. 보유인력 또는 보유시설
4.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주주

④ 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전문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보유 인력 및 보유시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2의 경영분야 또는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1인 이상의 상근인 전문인력
2. 전문회사 업무수행을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

제4조의3(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행위”란 전문회사와 해당 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간의 거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다만, 인수·합병 등 정당한 목적에 의한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1. 채무 보증
2. 담보 제공

② 법 제11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고유목적 사업
2.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해당 전문회사에 대한 재투자
4.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제1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7까지를 각각 제11조의8부터 제11조의11까지로 하고,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2.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 또는 부지의 연면적
3.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1조의5(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법 제17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11조의6(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중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②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제11조의7(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① 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9(중전의 제11조의5)제1항 중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11조의4제1항”을 “제11조의8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의10(중전의 제11조의6)제1항 전단 중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1조의11(중전의 제11조의7)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1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도지사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입주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으로,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

한”을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도시형 공장 중 공장건축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 공장을 말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차관
2. 교육인적자원부차관
3. 과학기술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문화관광부차관
6. 농림부차관
7. 정보통신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환경부차관
10. 노동부차관

11. 건설교통부차관
 12. 해양수산부차관
 13. 기획예산처차관
 14.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15. 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
 16. 특허청장
 17.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8. 그 밖에 벤처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제18조의4 중 “확인일부터 1년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은 확인일부터 1년
 2.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벤처기업은 확인일부터 2년
-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별표 1의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벤처투자조합의 신고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6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의6제5항에 따라 제출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신청서는 제3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의 신고서로 본다.

제4조(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라목(2) 중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을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로 한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전문인력 기준(제4조의2제4항제1호관련)

경 영 분 야	기 술 분 야
1. 경영학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1. 자연과학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2.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대학에서 자연과학분야를 강의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3.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전문대학에서 자연과학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4.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5.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지도사
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6.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기초기술분야·산업기술분야·공공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다. 국·공립연구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21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과태료 금액
1. 법 제4조의4제2항·제3항에 위반한 자	법 제32조제1항제1호	500만원
2. 법 제2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2	500만원
3. 법 제30조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2호제1항제2호	500만원
4. 법 제31조에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32호제1항제3호	300만원
5. 법 제31조에 위반하여 허위의 결산서를 제출한 자	법 제32호제1항제3호	500만원

3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유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교원·연구원의 창업요건을 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8284호, 2007. 1. 26. 공포, 2007. 4. 2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 분야의 벤처기업 확인요건 완화(영 제2조의3)

문화산업 분야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컨텐츠 등의 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벤처투자기관 등의 자본금 인수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완화함.

나.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부당한 자금 차입행위 등의 제한(영 제3조의9제3항제5호 신설)

(1)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신이 투자한 업체에 대하여 투자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자금 거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는 정상적 거래관계 외의 자금을 차입하거나 자산 매각을 하는 등의 부당한 자금 수입(收入)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3)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공정한 투자행위를 유도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부당한 자금 거래의 압박을 받는 사

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수익 배분시기의 확대(영 제3조의8)

(1)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만 투자수익을 배분할 수 있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하기 전에도 투자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구개발기업의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의 연장(영 제18조의4)

(1) 벤처기업확인의 유효기간이 벤처기업의 유형(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연구개발기업)과 관계없이 1년으로 단일화 되어 있음.

(2) 벤처기업확인 요건의 변동이 적은 연구개발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3) 벤처기업의 벤처기업확인 절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법제처 제공>